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3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박지원 · 김 윤
박해철 · 정진욱 · 최민희
채현일 · 이재강 · 이광희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“직계존속등”이라 함)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, 해외 체류,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”를 “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 으며,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·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·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 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